##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81

발의연월일: 2021. 4. 2.

발 의 자:김병주·김병기·기동민

김영주 • 유정주 • 정필모

김진표 • 홍영표 • 양정숙

양이원영・김민기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개혁 2.0의 일환으로 군은 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역규모를 감축하고 예비군의 비중을 높이고 있음. 특히, 동원 사단의현역 편성률은 기존 대비 약 75% 감소하여 해당 부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예비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지적이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예비역은 30일 이상 소집할 수 없어 동원부대의 관리에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고, 연령정년에 도달하여 퇴역한 군인은 예비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우수한 퇴역 군인을 예비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.

이에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를 도입하고, 퇴역한 군인도 선발되는 경우 예비역으로 활용할 수 있

도록 규정하고자 함(안 제3조의3 신설 등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병역법」(의안번호 제928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3조의3에 따른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조의3(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제)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중 제2 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평시 복 무 비상근 예비군(이하 "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"이라 한다)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국방부장관은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.
  - 1. 예비역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
  - 2. 퇴역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  -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은 선발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할 수 있다.
  - ④ 국방부장관은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규모를 재정여력과 군 구조 개편 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연간 30일 이상 소집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

- 은 2,0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그 밖에 소집분야, 소집기간, 선발, 소집의 중단, 보상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의 제목 중 "「병역법」"을 "「병역법」 및 「군인사법」"으로하고,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3조의3에 의해 선발된 평시복무 비상근 예비군 중 퇴역자는 「군인사법」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예비군의 조직) ① 예비군	제3조(예비군의 조직) ①
은 「병역법」에 따른 다음 각	
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	
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	
된 사람으로 조직한다. 다만,	
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	
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	
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	
역(豫備役) 및 보충역의 병(兵)	
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4. 제3조의3에 따른 평시 복무
	비상근 예비군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제3조의3(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
	군제)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
	중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
	을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
	있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
	(이하 "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
	군"이라 한다)제도를 시행할
	<u>수 있다.</u>

- ② 국방부장관은 평시 복무 비 상근 예비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선발한다.
- 1. 예비역 장교, 준사관, 부사관 및 병
- 2. 퇴역 장교, 준사관 및 부사 관
- ③ 제2항에 따라 선발된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은 선발된 날로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할 수 있다.
- ④ 국방부장관은 평시 복무 비 상근 예비군의 규모를 재정여 력과 군구조 개편 등을 고려하 여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증 가시켜야 한다. 이 경우 연간 3 0일 이상 소집되는 평시 복무 비상근 예비군의 정원은 2,000 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- ⑤ 그 밖에 소집분야, 소집기 간, 선발, 소집의 중단, 보상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조(「병역법」과의 관계) (생 제13조(「병역법」 및 「군인사 법」과의 관계) ① (현행 제목

략)
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3조의3에 의해 선발된 평
	시복무 비상근 예비군 중 퇴역
	자는 「군인사법」 제41조에도
	불구하고 예비역으로 편입할
	<u>수 있다.</u>